의안번호	2126482
의 뢰 인	박대출 의원
회 답 일	2024.2.8.
추계번호	24E01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– 집합투자기구 과세특례 범위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법률 제17759호 제91조의2(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자기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집합투자증권 이전을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양도에 포함하지 않음 ○ 적격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	–

주: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(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상 집합투자기구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(집합투자재산의 매매·평가손익은 유보 가능) ③ 금전으로 위탁·환급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법률 제17759호 제91조의2(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❑ 2025년 1월 1일부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가 증가할 예정이었으나, 개정안에 따라 과세특례 범위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현행 제도 대비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

○ 현행 제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적격집합투자기구[1]가 자신의 집합투자증

1)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(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) ①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상 집합

권을 투자자로부터 환매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의 소득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함에 따라 소득세수가 증가하고, 비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법인세를 부과함에 따라 법인세수가 증가할 예정이었음

○ 개정안에 따라 이들 소득을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소득세수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❑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, 관련 자료가 부재해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
Ⅲ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

투자기구 ② 매년 1회 이상 결산·분배(집합투자재산의 매매·평가손익은 유보 가능) ③ 금전으로 위탁·환급